안산대학교	지역사회협력에관한규정	규정번호	3-1-22
		제정일자	2019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대외협력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사회협력위원회)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활동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에 의해 위촉된 경우,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대한 수요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대한 실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6조(주관부서 및 담당부서)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하고, 협력·기여 유형에 따라 별표와 같이 담당부서를 정한다. 다만, 담당부서는 구체적 활동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계획의 수립) ① 주관부서는 지역사회 협력·기여를 위한 연도별 계획을 대내·외 수요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토대로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까지 수립 한다.
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기업(산업) 연계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평생·직업교육 제공에 관한 사항
4. 지자체 및 지역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
5. 기타 지역사회 협력·기여활동에 관한 사항

③ 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는 주관부서에 적극 협조 한다.

제8조(계획의 추진)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다.

② 부서별 업무분담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(추진실적 평가) ① 담당부서의 장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한다.

제10조(다음 연도 계획에 대한 환류) ① 주관부서는 종합 결과를 담당부서에 알려야 하며, 문

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.

③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3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